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354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7. 3. 21. 접수 제77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 박이규

별지